공고 제 116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7일

권선*1*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호	박 *호 1995- 03- 3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38번길 (권선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 12- 12
오 *연	오 *연 1992- 10- 1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(권선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 12- 12